

심판사무취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4. 12, 2017. 3. 1>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사무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편람의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전산입력) ①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이하 "심판정책과"이라 한다)는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처리·발송 등 전산처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판/특허소송사무시스템(이하 "심판사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입력하여 사건처리의 경과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

② 특허취소신청·심판에 관련된 접수부·발송부 및 기타대장은 심판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한다.<개정 2017. 3. 1>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사용자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서류 등의 처리

제4조(서류 등의 접수) ① 특허취소신청·심판에 관한 서면서류 및 전자적 기록매체(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등)·모형·견본 및 증거물(이하 "심판서류 등"이라 한다)은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출원등록과"라 한다)에 서 접수한다.<개정 2013. 1. 31, 2017. 3. 1>

② 심판정책과 또는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이 제출되면 필요한 사항을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한 후 접수일자, 제출인의 성명, 건명, 접수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1, 2017. 3. 1>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 운영지원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에서 접수하되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후에 도착된 것은 일·숙직 직원이 접수한다.

제5조(우편 등에 의한 서류 등의 접수) 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심판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는 즉시 문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부에 접수 연월일, 제출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건명을 기재하여 심판정책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

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에 그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의 연월일을 표시하여 합철하고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숙직직원이 서류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

원과에 인계하고 운영지원과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 심판정책과는 운영지원과로부터 인수한 서류에 통상환 증서 등의 유가증권이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로 첨부된 경우에는 접수절차를 거친 후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

제6조(서류 등의 접수절차) ①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서면으로 제출된 심판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개정 2010. 6. 29, 2013. 1. 31, 2017. 3. 1>

1.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제출인의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 서류명 등을 전산에 입력한다.

2. 심판청구 등과 동시에 특허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1호에 의한 접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특허고객번호, 서류명,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또는 심판번호(이하 "심판번호 등"이라 한다) 등을 전산에 입력한다.

4. 접수된 서류 등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이 제출되면,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관련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 및 제출인에게 전자화 부적합 항목의 정정 기회를 바로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0, 2013. 1. 31, 2017. 3. 1>

③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을 전자적 기록매

체로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1, 2017. 3. 1>

1.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산입력하여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내용과 전자적 기록매체제출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2. 전자적 기록매체 및 전자적 기록매체 제출서에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한다.
3.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다.

④ 제3항 제3호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방식 담당자별로 관리한다.<개정 2006. 10. 4>

제7조(심판서류 등의 처리)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 사용자지침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전자화된 서류철은 특허청 정보관리과(이하 "정보관리과"라 한다.) 주전산기에서 관리한다.

② 전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청 정보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 등의 반려) 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 1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견본·기타의 물건을 반려하고자 할 때에는 반려이유를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③ 반려이유 통지에 대하여 반려요청서가 제출된 경우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었으나 반려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9조(심판번호 등의 부여방법)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 특허취소신청사건, 당사자사건, 거절결정불복사건, 취소결정불복사건, 보정각하결정불복사건, 정정심판사건, 재심사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일의 순위에 따라 부여된 심판번호 등을 청구인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

② 제1항의 "사건의 구분"에 있어서 특허취소신청사건은 "소"로, 당사자사건은 "당"으로, 거절결정불복사건은 "원"으로, 취소결정불복사건은 "취"로, 보정각하불복사건은 "보"로,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사건은 "기"로 정정심판청구사건은 "정"으로, 재심사건은, "재소", "재당", "재원", "재취", "재보", "재정", "재기"로 추원사건은 "추원", "추보", "추취", "추정", "추기" 등으로 각각 약칭하여 표시한다.<개정 2017. 3. 1>

제10조(심판서류 등의 송달방법) ① 심판서류 등의 송달은 서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판정책과에서 행하고, 서류의 송달 내용은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개정 2017. 3. 1>

② 심판정책과는 전자문서 및 기타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송달
2. 문서송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취인에 대한 교부송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송달

③ 심판정책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된 통지서가 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에 의거 4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동안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등기우편 또는 송달함을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

④ 심판서류 등에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이하 "심결문 등"이라 한다.)의 등본을 송달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으며, 심결문 등의 송달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특허취소결정, 결정 또는 심결 등(이하 "심결 등"이라 한다)에 대한 불복기간과 소장을 제출할 제소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31, 2014. 1. 31, 2016. 9. 1, 2017. 3. 1>

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된 심결문 등이 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에 의거 4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송달되지 않은 경우, 심판장은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31, 2017. 3. 1>

제10조의2(송달영수인 및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①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법정대리인이 심판사건별로 송달영수인을 선정하고,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의 신고가 있는 심판사건에 대해 송달영수인에게 그 장소로 제10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1]

제11조(대리인 사이의 송달) ①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있어서 양 쪽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한쪽 당사자의 대리인이 상대방 대리인에게 송달될 심판서류 등의 부분을 교부하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심판원에 증명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심판서류 등이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장은 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의 증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서류 등의 부분을 교부받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은 취지와 그 날짜를 적고 송달받은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제12조(송달서류 등의 반송시 조치) ① 심판정책과는 송달서류 등이 반송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12, 2008. 6. 25>

② 제1항에 의하여 주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송서류와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등록명의)인 주소변경 신고 안내문"을 심판청구인(피청구인) 등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 2017. 3.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송달서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12, 2017. 3. 1>

④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심판청구서부분이 반송된 경우, 심

판정책과는 특허법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 1. 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당사자의 주소 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반송된 경우중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중"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2항의 절차를 밟은 후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12, 2008. 1. 30>

제13조(공시송달의 방법) ①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30>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시
2. 관보 · 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심판원게시판 게시

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 등의 보존 관리) ① 심판서류 등에서 전자화가 완료된 서류 등(서면에 의한 증빙자료 포함)은 절차에 따라 심판정책과 또는 주심 심판관이 관리한다.<개정 2017. 3. 1>

② 주심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이 종료되면 합의체 심판관이 서명한 심결문 등을 첨부하여 심결문 등의 등본 발송의뢰와 동시에 해당서류를 심판정책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

③ 심판정책과장은 해당사건의 심결문 등을 발송한 후 해당서류(전자적 기록매체를 포함한다.)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06. 10. 4, 2017. 3. 1>

④ 삭제<2006. 10. 4>

제3장 심판비용의 예납

제15조(심판비용의 예납) 특허법 제16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또는 재심비용(이하 "심판비용"이라 한다)에 관한 예납금 대상이 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 6. 29>

1. 증인, 감정인, 통역인에 대한 여비
2.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감정, 통역, 번역에 필요한 비용
3. 감정의 촉탁을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4. 현장검증 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판관 및 참여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여비

제16조(예납금 계산 기준) 제15조 각호에서 규정한 예납금대상 항목의 비용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6. 25, 2010. 6. 29>

1. 증인, 감정인, 통역인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산정하는 금액
2.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감정, 통역, 번역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금액
3. 감정의 촉탁을 한 경우에는 그 실비액
4. 현장검증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심판관 및 참여 공무원

등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의한 금액

제17조(예납금의 납부) ① 심판장은 심판비용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납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신청서에 청구권포기서를 첨부하는 경우 및 구술심리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0. 1>

② 심판정책과장이 지명하는 회계담당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받았을 때에는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예납금의 지급) ① 회계공무원은 예납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 심판장의 결재 및 영수인의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0>

제19조(예납금의 반환) ① 잘못 납부된 예납금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장은 잘못 납부된 예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한다.

③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증표를 회계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그 예납금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공무원은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에 기재하여 심판정책과장의 결재 및 영수인의 날인을 받은 후 환급하여야 한다.

제20조(반환되지 아니한 예납금의 국고 귀속) ① 사건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환급되지 아니한 예납금이 있을 때에는 회계공무원은 예납금을 당해 연도말에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

② 예납금의 처리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처리부에 동 완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특허취소신청절차

제20조의2(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분 송달) ①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분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권리자(특허취소신청참가인 포함)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재외자인 경우, 해당 권리 등록 당시 권리자로부터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의 포괄(또는 개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판관지정 사실과 대리인 선임확인여부를 먼저 통지한 후,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분을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20. 4. 6>

② 심사관 의견 요청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3. 1]

제20조의3(특허취소신청서 보정) 심판장은 권리자의 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정서에 새로 권리자가 될 사람의 이름 · 주소와 보정의 이유를 적어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1]

제20조의4(특허취소신청의 심리) ① 심판합의체는 특허법 제132

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 특허에 대한 복수의 특허취소신청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일자에 심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31호 서식의 취소신청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판합의체는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판합의체가 결정각하하는 경우에는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1]

제20조의5(특허취소신청절차 중 정정명세서등의 공고) 특허취소신청절차 중에 정정청구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허취소신청의 결정확정시 심판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정정명세서 공고의뢰를 정보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1]

제20조의6(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①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내지 제10항,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제1항, 제38조의2제1항, 제78조, 제84조 내지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의 "특허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제38조의2제1항의 "당사자계 심판"은 "특허취소신청"으로 본다.<개정 2017. 5. 1>

② 특허취소신청의 증거조사·보전절차,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는 각각 제7장, 제9장을 준용한다.

③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특허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효심판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3. 1]

제5장 심판절차

제21조(법정기간의 연장)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의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다.<개정 2016. 9. 1, 2017. 3. 1>

제22조(지정기간 및 그 연장) ①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제31조의 우선심판 또는 제31조의2의 신속심판에 해당할 때에는 추후 지정기간연장신청을 불승인할 것을 예고하고, 추후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9, 2008. 1. 30, 2012. 3. 2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1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에 대한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1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 1. 9, 2008. 1. 30, 2012. 3. 21>

④ 삭제<2008. 1. 30>

제23조(심판청구서 등의 부분 송달) ① 심판장은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 등의 부분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청구인(심판참가인 포함)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권리자로서 재외자인 경우, 해당 권리 등록 당시 권리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절차의 포괄(또는 개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지정 사실과 대리인 선임확인여부를 먼저 통지한 후, 심판청구서 등의 부분을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20. 4. 6>

② 심판청구서부분 등을 피청구인 등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는 심판중간서류 부분과 함께 별지 제20호에 의한 『의견요약표』 서식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당사자가 의견서 제출시 의견요약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10. 4>

④ 특허심판원장은 결정계 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 부분을 첨부한 별지 제22호에 의한 「심사관 의견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발송하여 관계 심사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8. 1. 30>

⑤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제4항에 의한 「심사관 의견요청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판사건에 대하여 최초 심판관 지정 후 1월이 경과한 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

에 청구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이유가 제출된 이후에 청구이유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08. 1. 30>

⑥ 제4항의 「심사관 의견요청서」에 의한 의견 제출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신설 2008. 1. 30>

제24조(답변서의 기재사항) ① 답변서에는 관련법령이 정한 기재사항 외에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판장은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제25조(심판청구서 보정) ① 심판장은 피청구인의 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보정서에 새로 피청구인이 될 사람의 이름 · 주소와 보정의 이유를 적어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삭제<2017. 3. 1>

제25조의2(심판서류의 주소관련 사항의 직권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및 기타 심판서류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 및 기타 심판서류의 주소(법인인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29]

제26조(심판청구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심판청구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이 접수된 때에는 구술심리 등을 개최하여 당사자의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취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취하 당시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판절차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7조(심판관 지정 및 변경) ① 심판정책과는 접수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의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지정 및 지정 후의 심판관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지정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당해사건 심판서류를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동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담당상품류와 관계없이 동일심판관에게 사건을 배정한다. 다만 본문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6건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심판부내의 다른 심판관에게 적정하게 배정한다.

<신설 2006. 1. 31>

⑤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동일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심판장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관 변경 요청을 하고, 서로 다른 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장간에 협의 조정한다.<신설 2006. 1. 31>

⑥ 심판정책과는 동일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심판 사건이 청구된 때에는 동일 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다른 심판사건들에 대해서는 주심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주심들은 동일한 상표에 대해 지정상품류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청구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야 한다.<신설 2006. 4. 12>

⑦ 특허·실용신안사건에 있어서 심판사건이 속하는 기술그룹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그룹 설명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0>

⑧ 특허심판원장은 제7항에 따른 기술그룹설명서에 선택된 기술그룹 및 심판관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3. 9. 10>

⑨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관 지정에서 배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17. 5. 1>

1.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용후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심판관으로서 임용직전 5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와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

⑩ 심판관이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7. 5. 1>

제28조(심판합의체의 운영) ① 특허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2013. 9. 10, 2016. 11. 11>

1. 종전의 판례에 따르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종전의 심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법률적·기술적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사회

적 영향이 큰 사건

3. 법원에서 취소된 사건으로서 그 사안이 중요한 사건
4. 여러 심판부에 공통으로 걸쳐있는 사건으로서 각 심판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전체적인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건
5. 3인 합의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6. 삭제<2010. 6. 29>
7.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달라 심판사건들의 주심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8. 동일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청구된 여러 개의 심판사건의 주심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1인의 심판관으로 지정변경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9. 사건 쟁점이 복잡하여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는 사건
10. 중소기업 사건, 심판부간 협업이 필요한 기술 융복합 사건, 일괄 심리가 필요한 사건, 공통기술 사건 등 특허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인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과,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또는 심판관 4인으로 구성하며, 합의체심판장은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주심심판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주심 심판관으로 지정된 자가 된다.<개정 2006. 4. 12, 2016. 11. 11>

③ 5인합의체의 심리진행 및 합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3인 합의체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의2(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직무) ① 특허청장은 심판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판업무 보좌를 위한 심판방식 심사관

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심판 방식, 구술심리의 지원 · 참여 및 조서작성 등의 업무를 한다.<개정 2009. 10. 1, 2010. 3. 30, 2010. 6. 29, 2019. 5. 31>

제28조의3(심판연구관의 직무)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인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필요한 조사 · 연구 및 그 밖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 11. 30>

제29조(보정명령 등의 절차) ① 심판청구서 등 심판관련 서류가 법령에 의한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표시하여 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심판청구료 등 수수료가 과오납 되었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과오납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심리진행) ① 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바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의 절차를 취하고 그 외의 것은 심리를 진행한다.

② 청구서 부분의 발송 또는 답변서 제출의 명령 등 송달을 요할 때에는 바로 송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7. 5. 1>

④ 삭제<2017. 5. 1>

제31조(심판의 순위) ①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개정 2006. 10. 4, 2010. 11. 19, 2012. 3. 21, 2013. 1.

31, 2015. 3. 12, 2015. 5. 20, 2015. 10. 16, 2019. 9. 25, 2020. 1. 10, 2020. 4. 6, 2020. 7. 14>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3.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4의2. 삭제

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으로서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6.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개정 2020. 4. 6>
7.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8.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9.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10.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다만,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자기 실시 중이거나 준비 중인

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은 제외한다.

12.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서 특허분류가 A61K 또는 C07K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A61K 6(치과용 제제) 및 A61K 8(화장품 제제)은 제외한다.)<개정 2019. 9. 25, 2020. 1. 10>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신설 2020. 1. 10>

②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가 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에 해당하여 우선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우선심판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1. 10>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5-1, 5-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6, 2020. 1. 10>

1. 삭제

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10호의 경우 사건을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3. 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의 경우 우선심판 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개정 2020. 1. 10>

④ 심판장은 이미 우선심판결정한 사건 중 우선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5-3호 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2016. 9. 1>

제31조의2(신속심판)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에 의한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9. 10. 1, 2010. 3. 30, 2012. 3. 21, 2013. 1. 31, 2015. 10. 16, 2016. 9. 1, 2017. 5. 1, 2018. 6. 1, 2018. 11. 30, 2020. 4. 6>

1. 특허법 제164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

152조제3항, 상표법 제151조제3항에 의하여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되지 아니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6. 1>

1의2.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6. 1>

1의3.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개정 2017. 5. 1>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사건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 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4.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

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개정 2020. 4. 6>

4의2.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신설 2020. 4. 6>

5.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6.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중소기업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7.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개정 2019. 9. 25>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나.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 85조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24-1, 24-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9. 9. 25>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 사실이 접수된 날 또는 심판관이 지정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
2. 제1항제1호의2·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신속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정정청구가 있는 경우는, 정정청구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인의 의견서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9. 9. 25>

1. 구술심리 개최일(구술심리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최후 구술심리 개최일)
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

료일

④ 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구술심리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7. 3. 1>

1. 신속심판결정일로부터 2. 5개월
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 5개월
3. 최초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 5개월

⑤ 삭제<2018. 6. 1>

⑥ 심판장은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24-3호 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7. 3. 1>

1. 이미 신속심판결정한 사건 중 신속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
2.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 결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24-4호 서식)
3. 심판이 절차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심판의 취지를 상실한 경우

제32조(심리종결) ① 심판에 있어서 심판장은 심리종결시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 4. 12, 2007. 1. 9, 2008. 6. 25, 2010. 3. 30>

1. 삭제
2. 신속·우선심판사건 또는 심문서에 미리 심리종결예정시기를 병기하여 통지한 심판사건
3. 구술심리 또는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시 당사자에게 심리종결예정시기를 구두로 통지한 사건
4. 심결각하 또는 청구각하하는 사건

② 심판관은 제27조 제4항에 의한 심판사건에 대하여 병합 또는 병행심리하여 동일자에 심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6. 1. 31>

③ 서로 다른 날에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의견서, 정보제출서를 통하여 심판관에게 동일자 심결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6. 1. 31>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심리는 제31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결을 동일자 또는 서로 인접한 시기에 하여야 한다.<신설 2006. 1. 31>

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개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 심리 중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속·우선심판사건의 경우 심판장은 심리종결예정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6>

제32조의2(심리종결보류결정) 심판장은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 이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심리종결보류신청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심리종결보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기간은 최대 2개월을 넘지 못한다.<신설 2020. 1. 10>

제33조(심판절차의 중지) ① 심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관련사건 심판번호, 중지이유 등

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절차중지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에게 심판절차중지 취소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6. 10. 4>

제33조의2(심판속행통지)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의 계속 중에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또는 등록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출원인 또는 권리의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특허법 제19조 등에 의한 절차속행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개정 2006. 10. 4, 2009. 10. 1, 2013. 1. 31>

②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계속 중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명의변경통지서(Transfers)가 접수된 때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심판절차 속행통지를 하고, 양수인이 재외자인 경우에는 특허관리인 선임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6. 10. 4>

제34조(거절결정불복심판 등) ①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특허청 해당 심사국(이하 "해당심사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원서류 등(이의신청 또는 등록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인수하여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결정 또는 특허(등록)유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청 등록과(이하 "등록과"라 한다.)에 그 출원서류 등 서류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1>

③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

원서류 등 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보정각하결정) ① 심판장은 상표·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계속중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이 요지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16>

② 심판장이 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는 해당 상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거절이유통지·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10. 16>

③ 심판장은 심판청구인이 상표법 제162조제1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2016. 9. 1>

④ 심판장은 심판절차 중지이유가 해소된 경우 심판을 재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16>

⑤ 제3항·제4항에 따른 심판절차의 중지 및 재개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5. 10. 16>

제35조(심사전치) 2009년 7월 1일 전 출원으로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청구에 관련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하"명세서등 보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그 청구가 부적법으로 각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06. 10. 4, 2009. 10. 1>

1. 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에 방식상의 불비가 있는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은 절차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불비사

- 항 중 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보정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보정된 경우에는 명세서 등 보정서 및 심판서류철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특허청 해당 심사국에 이송함과 동시에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심사전치 이관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심사관은 전치심사결과 특허(등록)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 전치심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보고서와 서류철(심판서류철 및 출원서류철)을 심판정책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의한 보고서와 서류철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전치 종결 및 심판번호 · 심판관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심판정책과는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당사자에게 심판관합의체 지정사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여부를 청구이유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6. 심사관은 전치심사결과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등록)결정서를 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고 특허(등록)결정내용과 심판서류 일체를 심판정책과에 송부하여야 하며, 심판정책과는 이를 근거로 하여 심판 종료 사실을 전산에 입력 처리하여야 한다.
 7. 심판청구의 취하서가 심판정책과에 제출된 경우에는 심판정책과는 이를 전산입력 함과 아울러 해당 심사국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심사국은 바로 심판청구서 등 심판서류 일체를 특허심판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① 심판정책과는 보정각하결정불

복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심사국으로부터 출원서류 일체를 바로 인수받아 심판서류철과 같이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는 원결정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심판정책과는 실용신안등록출원 각하결정불복심판에서 원결정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삭제<2010. 6. 29>

제38조(출원의 변경 등) 심판정책과 또는 심판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중에 청구인이 출원의 변경을 한 때에는 당해 심판서류철의 우측상단에 "출원변경"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정보제공의 처리) ①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의 계속 중에 제3자로부터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심판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계 심판의 계속 중에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6호,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려한다.<개정 2006. 10. 4, 2008. 6. 25, 2016. 9. 1>

②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이 있는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정보제공자에게 심결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심

사국에 취소환송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10. 4>

제38조의3(정정심판) ① 심판장은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고 동일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된 무효사유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정정심판청구인에게 심문서를 발송하거나, 무효심판청구인에게 정정심판청구사실을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규정된 정정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에 심결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8. 11. 30>

제39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구술심리

제39조의2(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하는 사건등)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계 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30, 2017. 5. 1>

1. 일방당사자 또는 쌍방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사건
2. 삭제<2017. 5. 1>

3. 석명권행사를 위하여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심판장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심

판사건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별지 제23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에 개최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심판장은 추후에 결정할 것임을 알리는 보류통지(별지 제12-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30, 2017. 5. 1, 2020. 4. 6>

③ 삭제<2012. 3. 21>

④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이 정해지면, 해당 일정을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술심리 개최 전까지 일반인의 방청신청을 받도록 한다. 다만, 심판정의 허용인원을 고려하여 방청인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 7. 14>

⑤ 심판장은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인의 구술심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 7. 14>

제39조의3(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 할 수 있는 사건) ①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심판의 당사자 쌍방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구술심리를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 6. 4, 2011. 3. 31>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에서 구술심리를 하고자 희망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심판사건신청서)의 '신청의 구분'란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4, 2009. 10. 1>

제39조의4(원격영상구술심리)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심판정에 출석시켜 구술심리(이하 "원격영상구술심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 9. 1>

1.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2. 상표·디자인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적인 증거제출이 없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구술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9. 1>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③ 원격영상구술심리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의3제2항

을 준용한다.<개정 2016. 9. 1>

④ 원격영상구술심리는 심판관계인이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한 구술심리로 본다.<개정 2016. 9. 1>

⑤ 원격영상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심판관계인이 출석한 심판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본조신설 2013. 12. 27]

제40조(구술심리기일의 지정) ① 심판장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제3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3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30, 2008. 6. 4>

② 심판부는 기일지정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송달하여 구술심리기일은 통지하고, 쟁점이 될 심문사항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쟁점심문서(별지12-4호 서식)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1. 3. 31>

제41조(구술심리기일의 변경) ①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 6. 4>

② 심판장은 당사자 등이 기일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0>

③ 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별지 제12-2호 서식)를 통지한

다.<신설 2010. 3. 30>

제42조(다음 기일의 지정)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구술심리기일의 취소) ①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제40조 또는 제41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된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별지 제12-3호 서식)을 송달하여 통지한다.

[본조신설 2010. 3. 30]

제43조(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① 증인 · 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 또는 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증인출석기일변경통지서(별지 제13-2호 서식)를 송달하여 통지한다.<개정 2008. 6. 4, 2010. 3. 30>

② 증인 · 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심판청구의 취하, 그 밖의 사정으로 출석요구를 취소할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증인출석요구취소통지서(별지 제13-3호 서식)를 통지한다.<개정 2010. 3. 30, 2010. 11. 19>

제44조(구술심리의 녹음 등) 심판장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 녹음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를 하게할 수 있다.

제45조(녹음테이프, 속기록의 보관 등)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테이프(전자적 녹음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속기록

은 심판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0>

② 심판정책과장 또는 심판관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

③ 특허법 제1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심판이 확정되면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3. 30]

제45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①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6. 1>

1.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하는 개입 명령<신설 2018. 6. 1>

2. 변리사법 제8조의2에 규정된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에 징계 요청<신설 2018. 6. 1>

③ 심판장은 허락없이 심판정 안에서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30]

제45조의3(구술심리 조서의 작성)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특허법 제154조제5항에 의한 구술심리 조서(필요시 증인 · 당사자신

문 조서를 포함한다)를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10일 내에 해당 심판사건의 심판전자서류철 심판이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등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30, 2019. 5. 31]

제45조의4(구술심리의 녹화·중계) ① 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술심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녹화 또는 촬영(이하 "녹화 등"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고, 녹화 등의 결과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심판관계인은 자신의 변론권·방어권 그 밖의 권리의 보호를 위해 심판장의 구술심리 녹화·중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심판장은 해당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구술심리를 녹화·중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심판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31]

제7장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사무

제1절 총칙

제46조(증빙자료의 신청) 심판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증인신문의 신청) ① 심판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

의2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증인의 성명 · 주소 · 연락처,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

제48조(감정서 등 사본 제출) 심판관이 감정을 명하거나 특허법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같은 법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촉탁을 하는 때에는 감정서 또는 회답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① 심판관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제1항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다.

③ 심판관은 당사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비용 등의 납부 및 관리 등에 대한 절차는 제3장의 절차에 의한다.

제2절 증인신문

제50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① 심판관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51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신청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 2010. 3. 30>

② 심판장은 제1항 서류의 부분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는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증인의 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에는 당사자의 표시, 신문사항의 요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2. 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②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불출석의 신고) 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증인이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23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를 특허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54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증인 ·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 진술 · 증언 ·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32조 · 동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 2013. 1. 31>

제3절 감정

제55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정의 목적, 목적물, 감정사항(별지 제32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② 심판장은 제1항 서류의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판관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대방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심판관은 제1항의 서류를 토대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정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관이 감정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판관은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다.

제56조(기피신청의 방식) 심판장은 당사자가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감정서의 설명) ① 심판장은 특허법 제157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58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서증

제59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①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은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 6. 25>

② 특허심판원장은 서증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이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서증이 판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서면원본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당사자가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고자 할 때에는 증거로 원용할 부분이 초본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본만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⑤ 심판관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도 서증 원본을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0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심판장은 당사자에게 그 문서의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는 그 부분의 번역문만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61조(서증부호)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하는 것은 "갑"
2.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것은 "을"
3.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② 심판장은 같은 부호를 사용할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1항의 부호 다음에 "가" "나" "다" 등의 가지부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6. 25>

제62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① 심판장은 특허법 제157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45조, 제3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신청, 문서송부촉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등(별지 제33호 내지 제35호 서식)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제출 의무자, 공공기관 등에게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해당서류를 붙여서 제출하도록 제출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공문 등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0. 1, 2020. 1. 10>

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 제346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목록의 제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제시·제출된 문서의 보관)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장 제9절 증거물 등 보관물의 관리 및 반환절차에 의한다.

제5절 검증

제64조(검증목적물의 제출)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장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부호 앞에 "검"이라고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출된 검증목적물에 관하여는 제59조 제5항과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당사자신문

제66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당사자 본인이나 당사자를 대리
· 대표하는 법정대리인·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문에는 제50
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조 제1항 제
2호 중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법률상 불이익
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고쳐 적용한다.

제7절 그 밖의 증거

제67조(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① 심판관은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요구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
사를 신청한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68조(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심판관은 녹음·
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
문 안에서 "녹음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
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테이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
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등이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
장소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하
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심판관은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요구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테이프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감정 등 규정의 준용) 도면·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증거보전

제70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1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① 심판청구 전의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심판정책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주심 심판관에게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보내야 한다.

제9절 증거물 등 보관물의 관리 및 반환

제72조(증거물 등의 정의) 이 규정에서 "증거물 등"이라 함은 특허심판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관하는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제출한 당사자 또는 송부한 제3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가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예: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심판서류 또는 심판에서 인용한 것을 심판

관의 석명처분에 의해 제출하게 한 것,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서 심판원이 유치한 것, 서증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원본,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된 문서, 심판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송부되어 온 문서, 문서의 진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용으로 제출 또는 송부된 대조용 문서, 제출되거나 송부된 검증목적물 등으로서 심판원이 유치한 문서와 기타 물건].

제73조(증거물 등의 관리) ① 증거물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는 심판진행 절차에 따라 심판정책과 또는 심판관이 처리한다. 그러나 심판이 종료된 증거물 등에 대하여는 심판정책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적정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보관에 있어서는 그 물건 등이 망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4조(증거물 등의 접수 및 보관) ① 심판정책과장이 지정한 접수담당자는 증거물 등이 제출되면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상의 정보를 전산 입력하고 "증거물접수정보"를 출력하여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한 후 전자화작업을 의뢰하고 증거물 등에는 바코드를 부착하여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와 함께 심판정책과의 방식심사자에게 이관한다.<개정 2008. 6. 25>

② 제1항의 방식심사자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및 증거물 등에 대한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와 첨부된 증거물 등을 해당사건의 주심 심판관에게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

③ 주심 심판관은 심판이 종료되면 심결문 등본 발송의뢰와 동

시에 당해 사건에 관한 증거물 등을 심판정책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심판정책과의 방식심사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물 등을 심판부에 이관하거나 이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거물건관리대장에 입력한 후 증거물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증거물 등의 대출) 증거물 등의 관리자가 그 보관하는 증거물 등을 타심판부 또는 타법원에 일시적으로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출의 취지, 대출영수자 및 일자 등 필요사항은 이를 증거물건관리대장의 해당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6조(증거물 등의 반환) ① 심결의 확정 등으로 증거물 등을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심판장은 당사자의 반환 신청(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직권으로 증거물반환통지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증거물 반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10. 4, 2017. 3. 1, 2018. 11. 30>

② 증거물 등은 이를 반환 받을 제출자 또는 송부자에게 교부하고 수령증(별지 제15호 서식)에 영수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부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증거물건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입력하고 우편발송번호를 수령증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반환을 희망하지 않은 증거물과 증거물반환통지서에 지정한 기일(반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때에는 공시송달일로부터 6주일이 경과된 때)까지 수령하지 않는 증거물 등은 심판정책과에서 이를 폐기한다.<신설 2006. 10. 4>

제77조(보관상의 점검) 심판정책과장은 매월 말 증거물건 관리대

장상의 기록과 증거물 등의 보관상황을 점검하고, 유치할 필요가 없는 증거물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8장 심결 및 심판사항의 등록·공고

제77조의2(심결일) 심결은 심리종결통지일의 다음날부터 하되 심리종결통지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06. 10. 4>

제78조(등록사항 등) ①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사건 중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라 예고 또는 확정등록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과장에게 등록 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31, 2006. 4. 12, 2013. 1. 31, 2015. 10. 16>

② 심판사건에 대한 등록 사항 중 심결확정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1. 심판청구인이 복수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심판을 취하한 경우
2. 심판청구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지정상품)이 복수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청구항이 취하된 경우
3. 복수 개의 청구항(디자인 대상 물품,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결이 있고 그 후 일부청구항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어, 일부확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심판청구취지 등이 심판보정서에 의해 변경된 경우(요지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5. 기타 심판관련 사항이 잘못 등재된 경우

③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특허청 등록과 및 당사자 등에

계 심판청구취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1>

④ 소 또는 상고 계속 중에 심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법원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심판절차 중 정정명세서등의 공고) ① 정정심판 절차중의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3. 1. 31>

1. 2001. 6.30.이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심판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정정청구공고결정을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정정청구 공고의뢰를 정보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2. 2001. 7.1.이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정정한다는 심결이 있으면 심판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정정명세서 공고의뢰를 정보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 절차 중에 정정청구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정책과는 심판의 심결확정시 제1항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

③ 심판정책과 및 심판관은 심판절차 중 출원공고결정 등 공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관리과에 공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장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

제80조(심판번호 부여방법 등) ① 심판정책과장은 특허법 제189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9조제2항 또는 상표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

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이 심판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취소판결"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2016. 9. 1>

② 송무과장은 제1항의 사건 중 결정계 사건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액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1. 10>

제81조(심판관 지정 및 변경) 심판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82조(심판서류철의 관리) 심판정책과는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의 심판서류철과 합철하도록 한다.

제10장 보칙

제83조(이송) 심판에 관한 서류가 특허청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즉시 이를 특허심판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4조(심판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①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나 제3자가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심결문, 조서의 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또는 재심이 계속중인 경우 등으로써 열람·복사 등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심판정책과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결문·조서의 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심판정책과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심판정책과장은 산업재산권법위반에 대한 수사 또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 무역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요청하면 심판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 11. 30>

<신설 2017. 5. 1>

제85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별지 제30호 서식의 심판서류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과 함께 심판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등"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복사의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열람·복사의 제공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1>

1.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 등의 열람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장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여 비밀기재부분에 대한 열람·복사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① 특허심판원장은 당사자가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심판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제87조(부실권리존속방지를 위한 절차) ① 특허·실용·디자인·상표의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 및 판결이 이루어진 후, 심결확정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권리가 존속되는 경우에는 부실권리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 10. 1, 2017. 3. 1>

1. 권리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 등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
2.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을 허여함으로써 심판청구가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
3. 삭제<2017. 3. 1>

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처리된 때에는 각 권리별로 해당 심사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심판서류철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

제88조(부가기간의 지정) ① 심판장은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심결 등에 대한 소제기기간에 대하여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은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심결문 등의 주문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결 등과는 별도의 결정문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3. 1>

제89조(심판제도발전협의회 등의 설치·운영) 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제도발전협의회와 심판관협의회, 심판제도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0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8. 6. 1>

부칙 <제1010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 판 비 용 예 납 요 구 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신청한 증인 의 신문(증인 출석 등) 비용 등 예납금명세에 따른 예납금 원을 20 . . . 까지 아래 지정된 예납인의 이름으로 은행계좌에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출기일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예납인 :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특허청(심판원예납금)

예 납 금 명 세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

예 납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심판사건의 심판비용 예납금 중 금 원이 남았으니 인장 및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특허심판원으로 오셔서 찾아가시거나 FAX(042-472-3474)를 통하여 통장사본(예납인 본인의 실명통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하면 위 금액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관계법령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특 허 심 판 원 장

영 수 증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위 건에 대한 심판비용액예납금 중 잔액 금 원을 영수하였습니다.

영 수 일 자
영 수 인 성 명
 주 소

특 허 심 판 원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우선심판신청서<개정 2006.4.12., 2009.10.1., 2015.10.16., 2020.1.10.>

【서류명】 우선심판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사유】

-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사건
-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
-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
-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 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사건
-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기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사건

【증거방법】 (별지사용 가능)

【취지】 위와 같이 우선심판을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 【첨부서류】**
1. 우선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첨부서류】 1. 우선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심판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

제31조(심판의 순위) ①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으로서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6.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7.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8.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9.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10. (생략)

11.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은 제외한다.

12. (생략)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우선심판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선심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선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 이 통지서 발송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가 종결될 예정입니다.
3. 우선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1회로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우선심판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소

대 리 인 성 명
 주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소

대 리 인 성 명
 주소

1. 위 심판사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선심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선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 이 통지서 발송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가 종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께서는 심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선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1회로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지정기간연장신청은 1회로 엄격히 제한되고, 추후 연장신청은 불승인됩니다.)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우선심판불승인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이 사건 우선심판신청은 우선심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우선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우선심판결정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우선심판 사유가 소멸되어 우선심판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가 월 중 종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출기일에 대하여 연장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심리종결 이후 제출되는 자료는 심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 판 장

[별지 제6-2호 서식] 심리종결 보류신청서<신설 2020.1.10.>

【서류명】 심리종결 보류신청서

【심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접수(발송)번호】**)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의 발송번호

【신청이유】

(**【보류희망 개월 수】**)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동의서 1통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절차중지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아래 이유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중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23조제1항, 제164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25조제1항, 제152조제1항; 상표법 제25조, 제151조제1항)

이 유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 판 절 차 속 행 통 지 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아래 권리승계인에게 심판절차를 속행하기로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권리승계인께서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9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21조, 상표법 제21조)

(피)청구인(권리의 승계인)

성 명
주 소

심 판 장

[별지 제9호 서식] 심사전치에 관한 심판서류철이송<개정 2006.4.12., 2008.6.25.,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심 판
수 신 특허청장
참 조
제 목 심사전치에 관한 심판서류철이송

○○○○년 특허출원 제○○○○○호 거절결정불복 에 대하여 구 특허법 제173조(구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심판서류철을 이송하니 재심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심판원장

특 허 심 판 원 심사전치이관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청구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하게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관계법령: 구 특허법 제173조(심사전치), 구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72조)

특허심판원장

특 허 심 판 원
심사전치종결,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에 청구된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심사전치가 종결되어 심판관이 심판하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심판번호 및 심판관 합의체가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심판번호
심 판 장 심판관
 주 심 심판관
 심판관

특허심판원장

특허심판원
제 부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특허법 제154조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제3항, 상표법 제1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 일시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니 출석하시기 바라며, 구술심리진술요지를 기재한 서면 1통을 . . .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장 소

2. 구술심리 후 바로 심리종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상기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께서는 ‘구술심리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의 구술심리 기일 지정을 취소합니다.

20

심 판 장

특허심판원
제 부
구술심리 쟁점심문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년 월 일 개최되는 구술심리의 주요 심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
하오니 . . .까지 진술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심 판 장

[별지 제12-5호 서식] 구술심리 보류통지서<개정 2020. 4. 6., 2020. 7. 14.>

발송번호

발송일자

특 허 심 판 원
제 ○ ○ 부
구술심리 보류통지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에 관한 0000.00.00자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추후 심판서류를 검토한 후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최일정 및 장소를 정하여 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증인출석요구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증 인 성 명
주 소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신문하고자 하오니 . . . 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57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제2항, 상표법 제144조제2항)

2.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232조, 실용신안법 제52조, 디자인보호법 제229조, 상표법 제237조)

심 문 사 항 요 지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증인출석기일변경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증 인 성 명
주 소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신문하고자 지정된 . . . 의 증인신문기일을 . . . 로 변경하오니 . . . 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57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제2항, 상표법 제144조제2항)

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232조, 실용신안법 제52조, 디자인보호법 제229조, 상표법 제237조)

심 문 사 항 요 지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증인출석요구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증 인 성 명
주 소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 . . 에 지정된 증인의 신문을 취소합니다.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제 출 요 구 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 . . 까지 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사 항

심 판 장

[별지 제15호 서식] 증거물건 반환(대출)수령증

증거물건 반환(대출)수령증

심판번호 :

수령사유 : 반환(대출)

위 사건에 관한 다음의 모형·견본·증거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20

수령내역

수령인 성명 : (인)

주소 :

특허고객번호 :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정정심판청구공고결정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주 문 이 건 정정심판청구를 공고 한다.

이 유
(별 지)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심 판 장 심 판 관
주 심 심 판 관
심 판 관

[별지 제17호 서식] 정정심판청구공고<개정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정정심판청구공고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발명(고안)의 명칭
분 류

주 문

이건 정정심판청구를 공고 한다.

청 구 요 지

이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특허 제 호 발명의 명세서중 특허청구범위 항에 [△ △]라고 기재된 것을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목적으로 『 ○ ○ 』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첨 부 특허 제 호 발 명 의 명세서 또는 도면
등록 실용신안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심 판 56210~
수 신 특허청장
참 조 정보관리과장
제 목 정정명세서 공고의뢰

정정된 명세서(도면)에 대한 공고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심판청구인

심판청구일

심결일자

첨 부 1. 정정의 요지서
2. 정정된 명세서 및 도면.

20

특 허 심 판 원 장

<의견 요약표>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예시 <우측 제출여부란에 ○표시 후 요약내용을 ()에 기재></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여부</p>
<p style="text-align: center;">종전 주장에 대해</p>	<p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주장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종전 주장과 다르거나 새로운 주장 제출함 (새로운 주장:)</p>	
	<p style="text-align: center;">종전 주장 중 일부를 철회함 (철회 주장:)</p>	
	<p style="text-align: center;">종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 제출함</p>	
<p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증거 제출 여부</p>	<p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증거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증거 제출함 (새로운 증거:)</p>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p>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사항 ()</p>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절차중지를 아래의 이유에 의하여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유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수 신 특허청장
참 조 ○○심사국장
제 목 심사관 의견요청서

다음과 같이 심판청구되었기에 심판청구서 부분을 송부하오니 심사관은 의견이 있는 경우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거절결정 또는 원결정 유지 이유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다 음 -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출 원 번 호
분 류
붙 임 심판청구서부분 1통(심판시스템의 해당사건 심판이력 참조). 끝.

특 허 심 판 원 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서면심리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이미 제출된 심판서류로 보아서 특허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심 판 장

[별지 제24호 서식] 신속심판신청서<개정 2009.10.1, 2010.3.30, 2012.3.21., 2013.1.31., 2015.10.16., 2019.9.25., 2020.1.10., 2020.4.6.>

【서류명】 신속심판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사유】 법원에 계류중 또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사건 관련 심판

양 당사자 신속처리 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
부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심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정정심판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당사자계 심판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심판

【증거방법】 (별지사용 가능)

【취지】 위와 같이 신속심판을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첨부서류】 1.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신청사유가 “법원에 계류중(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또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사건 관련 심판”인 경우에는, 법원에 지식재산권침해분쟁이 계속중이거나,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있거나, 검찰 또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을 증명하는 소명서(예를 들어, 해당 권리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소장, 해당 권리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가처분신청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신청사유가 양 당사자의 신속처리 합의인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FAX로 받은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도 가능)
- 신청사유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음을 증명하거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사유가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정정심판”이란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특허/실용신안)가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특허법원 단계의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을 말하며, 이 경우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변론 종결 전 최초임을 증명하는 소명서(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소송이력 출력하여 제출) 또는 특허법원에서 무효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에 대응함을 증명하는 소명서(무효증거, 무효사유에 대한 준비서면 등)를 제출해야 함
- 신청사유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 신속심판신청 당사자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심판청구시 증빙서류 원용 가능)
- 신청사유가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심판”인 경우,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심판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규제 샌드박스 신청확인서 제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신속심판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심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1회로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신속심판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2제2항에 따라 신속심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속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구술심리기일로부터 2주 이내(구술심리 개최가 필요없는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신속심판결정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5개월 이내)에 심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계서는 심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1회로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지정기간연장신청은 1회로 엄격히 제한되고, 추후 연장신청은 불승인됩니다.)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신속심판불승인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이 사건 . . . 신속심판신청은 신속심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속심판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심 판 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신속심판결정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신속심판 사유가 소멸되어 신속심판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심 판 장

[별지 제24-4호 서식] 신속심판결정취소신청서<개정 2017.3.1., 2018.11.30>

【서류명】 신속심판결정취소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변리사】**)

(**【포괄위임번호】**)

【취지】 위와 같이 신속심판 결정취소를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동의서 1통

【서류명】 구술심리기일변경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제출원인 발송번호】

【신청사유】 양 당사자 합의 현저한 사유 (개요 :)

【희망기간】

【취지】 위와 같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동의서 또는 소명서(증빙자료 포함)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1. 【신청사유】란

당사자계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기일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합의에 체크하고, 결정계 또는 당사자계 사건에서 일방에게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저한 사유에 체크하고 개요를 기재함. 예) 개요 : 법원 기일 참석, 예비군 훈련 등

2. 【희망기간】란

신청사유가 양 당사자 합의의 경우에는 협의된 기간을 기재함. 예) 3월 셋째주

신청사유가 현저한 사유의 경우에는 희망기간을 기재함. 예) 3월 셋째주

3. 【첨부서류】 1. 동의서 또는 소명서(증빙자료 포함) 1통

- 신청사유가 양 당사자 합의의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고 협의기간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상대방의 FAX로 받은 서명 또는 날인을 제출하여도 무방)

- 신청사유가 현저한 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증빙자료가 포함된 소명서를 제출해야 함.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현저한 사유를 소명하되 선임된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두가 현저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

【서류명】 기술그룹 설명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기술그룹】 심판사건이 속하는 기술그룹에 표시(복수 선택 가능)

- | | | | |
|---------------------------------|--------------------------------|--------------------------------|-------------------------------|
| <input type="checkbox"/> 건설 | <input type="checkbox"/> 계측기 | <input type="checkbox"/> 금속 | <input type="checkbox"/> 기계 |
| <input type="checkbox"/> 농수산·식품 | <input type="checkbox"/> 디스플레이 | <input type="checkbox"/> 디지털방송 | <input type="checkbox"/> 바이오 |
| <input type="checkbox"/> 섬유 | <input type="checkbox"/> 수송기기 | <input type="checkbox"/> 약품 |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
| <input type="checkbox"/> 융합기술 | <input type="checkbox"/> 의료 | <input type="checkbox"/> 전자 | <input type="checkbox"/> 정밀부품 |
|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 | <input type="checkbox"/> 컴퓨터 | <input type="checkbox"/> 화학 | <input type="checkbox"/> 환경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취지】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기술그룹 의견서 1통

※ 위 기술그룹 표시는 심판업무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며, 표시에 대한 결과는 별도의 통지없이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

방 식 심 사 란	담당	사무관

【서류명】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송달영수인】

【성명(명칭)】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송달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취지】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제출인(심판청구인 또는 심판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송달영수인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였으므로,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신청인 (인)

【첨부서류】 제출인과 송달영수인의 연서를 증명하는 서류 1통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정정심판청구사실통지서

심 판 번 호 (연도) 정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귀하가 청구한 무효심판(20 당)과 관련된 정정심판이 위와 같이 청구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정정심판에 대하여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른 정보제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중 법원에 제출한 무효사유 등)에는 정보제출서 서식(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을 사용하여 20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심 판 장

인

[별지 제29호 서식] 증거물반환신청서<개정 2017.3.1., 2020.1.10.>

【서류명】 증거물반환신청서

【수신처】

【제출일자】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출원(등록)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변리사】

【반환청구물건】

【수령방법】

【취지】 위와 같이 증거물 반환을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소명서 1통

【서류명】 심판서류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변리사】

【신청사유】

【취지】 위와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소명서 1통

취소신청사건 신청서

【신청구분】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심리개시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의 이유】

(【첨부 서류】)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2호 서식] 감정신청서<신설 2020.1.10.>

【서류명】 감정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사유】 (별지사용가능)

1. 감정의 목적
2. 감정의 목적물
3. 감정사항

【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제출인은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감정의 목적, 목적물, 감정사항을 기재한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33호 서식] 사실조회신청서<신설 2020.1.10.>

【서류명】 사실조회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사유】 (별지사용가능)

1. 사실조회 목적
2. 사실조회 기관
3. 사실조회 사항

【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제출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사실조회 신청사항을 기재한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서류명】 문서제출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사유】 (별지사용가능)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내용)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제출의무의 원인(해당란에 √ 표시)
 - 당사자가 심판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
 - 제출인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인도·열람문서)
 - 문서가 제출인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음(이익문서)
 - 문서가 제출인과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법률관계문서)
 - 그 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사유 :

【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제출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문서제출신청사항을 기재한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35호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서<신설 2020.1.10.>

【서류명】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사유】 (별지사용가능)

1. 기록의 보관처
2. 송부촉탁할 기록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제출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문서송부촉탁 신청사항을 기재한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